

 신안산대학교	<b>성희롱 ·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</b>	규 정 번 호	2-5-11
		제 정 일 자	2001.04.01
		개 정 일 자	2024.3.20
		책임부서/팀·계	입학학생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 ·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,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·성폭력 상담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,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.

1.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, 정신적,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.

2.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혐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.

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.

③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교 법인의 정관과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, 피신고자 및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.

**제4조(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)**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가진다.

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,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.

③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.

④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.

**제5조(성희롱 · 성폭력상담실 설치)** 총장은 대학 내에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폭력 사건 발생의 예방과 이에 대한 구성원들에 안내·신고 및 상담의 편의를 위하여 성희롱·성폭력 상담실(이하 “상담실”이라 한다)를 둔다.

**제6조(구성)** ① 상담실에는 실장과 부실장 및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둔다.

② 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
③ 부실장은 필요한 경우 실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

고 연임할 수 있다.

**제7조(실장)** 실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의 관리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**제8조(운영위원회)**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상담실장 및 상담부실장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.

④ 위원회는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,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교수와 직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상담실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상담실의 내규 및 제정 개폐

2.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
**제9조(조사위원회)**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상담실 실장 또는 부실장이 되고, 위원은 실장의 조사의뢰가 있을 때 부실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하고, 그 임기는 조사가 종결되는 때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, 위원장이 그 대상일 때에는 상담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0조(신고)**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본 대학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 상담실에 한다.

② 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담실로 이송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조사와 상담)** ① 실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신고가 접수되면 실장은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에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조사위원회의 업무개시는 신고가 접수된 최초의 시간으로 한다.

④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3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. 단,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12조(징계)** ① 실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,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실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 제출 및 봉사활동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③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.

**제13조(운영세칙)** 실장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24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